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급]표 (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독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독일어능력시험 (Test DAF)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 (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을 말한다.	수준 3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 (Goethe - Zertifikat)을 말한다.	GZ B2 이상
불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델프/달프 (DEL/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달프 (Dipl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를 말한다.	DELF B2 이상
러시아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토르플 (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 (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1단계 이상
중국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 (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 HSK)를 말한다.	5급 210점 이상
일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 (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74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 (Japanese -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N2 150점 이상
스페인어	스널트 (SNULT)	서울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을 말한다.	6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750점 이상
	텔레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텔레 (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2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4. 위 표에서 정한 시험에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

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